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소수 조합원·입주민 개인을 위한**

#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

2017.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소수 조합원·입주민 개인을 위한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

주택조합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주택 분쟁(규약)에 있어 조합(집행부)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개개인은 법적대응이 어려운 실정인 바, 소수 조합원·입주민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자 함

## I

### 추진개요

####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자도 대상이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단체는 제외

-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민 단체는 제외

#### ■ 추진계획

- '17. 1월 :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 공고, 변호사 추천 요청

- '17. 2월 : 주민홍보 및 변호사 자문계약 체결

- '17. 3월 ~ 12월 : 변호사 법률자문 시행(상시)

#### ■ 소요예산

- 7,200천원(구비)

- 법률고문변호사 2명에게 각각 매월 수당 30만원 지급

-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준용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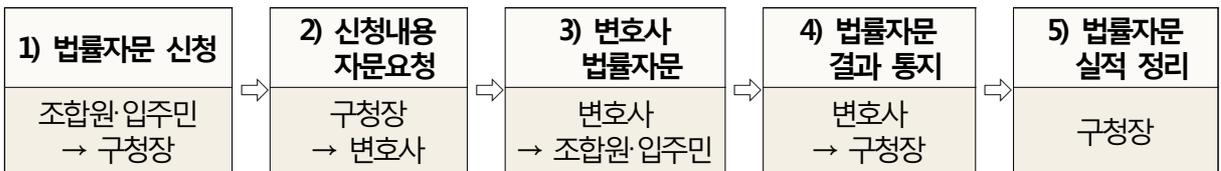
● 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한 개인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조합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함

※ 법률자문 내용 예시

<p>1) 신청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li> <li>-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조합원 탈퇴에 관한 사항</li> <li>- 그 외 조합규약 및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li> </ul> <p>2) 신청자가 '공동주택 입주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li> <li>-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li> <li>-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공동주택 전유부분 경계에 발생한 문제(층간소음, 층간누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그 외 관리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li> </ul>
--

■ 지원절차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구청장에게 법률자문 신청
  - ※ '법률자문 신청서' 【서식1】 참조
- 2) 구청장은 법률자문 신청서를 첨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함
- 3) 변호사는 신청자와 일정을 정하여 상담 실시
- 4) 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법률자문 결과를 팩스 또는 e-mail로 통보
  - ※ '법률자문 결과 통지서' 【서식2】 참조
- 5) 구청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정리함
  - ※ '법률자문 실적부' 【서식3】 참조

### Ⅲ

## 붙임

- 【서식1】 : 법률자문 신청서
- 【서식2】 : 법률자문 결과 통지서
- 【서식3】 : 법률자문 실적부. 끝.





